



## 2020-1 학생자율설계전공 신청 안내

### ‘학생자율설계전공’이란?

- 기존의 ‘단일전공’이나 ‘학제간전공’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학생 본인의 진로목표 혹은 관심분야에 따른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이수하는 전공 형태
- 이수완료 시 복수전공으로 인정하여 학위를 수여함

### 학생자율설계전공생 특전

- ▶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수강확정 최우선순위 부여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

### 신청자격

※ 아래 ①, ②항 중에 해당되는 학생

- ① 19-2학기 기준 3~6학기 재학생
- ② 3~6학기를 이수한 휴학생 중 2020-1학기 복학 예정자

### 신청기간

2020.01.06(월)~01.23(목)

### 신청방법

※아래 ①~④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사팀에 제출하고, ①~③번 작성파일을 이메일로도 송부

- ▶ 인쇄물 제출처: 행정관 404호 학사팀 ▶ 파일 송부처(\*파일에는 날인 불요): [haksa@sm.ac.kr](mailto:haksa@sm.ac.kr)

- ① 학생자율설계전공 신청서(붙임1 서식)
- ② 학업계획서(붙임2 서식)
- ③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표(붙임3 서식)
- ④ 성적증명서 1부

} 작성요령은 본 문서 3~4페이지 참조

### 문의

학사팀 학생자율설계전공 담당 T.02-710-9019

△ 학생자율설계전공 집중 상담 시간 △

평일 13:00~15:30

(신청기간 중 졸업심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효율적 업무진행을 위해 상담시간을 정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학생자율설계전공 이수 가이드

## ▶ 학생자율설계전공은 우리대학 '복수전공'의 한 유형입니다.

- 학생자율설계전공은 15학번 이후인 학생들이 제1전공을 다전공과정(Multifull Major Course)으로 이수할 때, 추가로 선택하여 이수해야 하는 제2~4전공 중 하나로 인정됨
- 학생자율설계전공 졸업기준학점(36학점)을 이수완료하고 졸업논문을 통과할 시 '복수전공'으로 인정되어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음 ※단, 제1전공 졸업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만 복수전공 학위가 수여됨
- 졸업 시 학위증 및 각종 증명서에 복수전공으로 기재됨

## ▶ 학생자율설계전공 이수 시 아래와 같은 특전이 있습니다.

- 다른 전공영역과 9학점까지 중복 인정됨  
※그러나 교과목이 두 번 인정되는 것일 뿐, 학점이 두 배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수강신청 시 제1전공생과 동일한 수강확정 순위를 갖게 됨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 한정하여 시범운영 중

## ▶ 학생자율설계전공은 재학 중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학생자율설계전공은 이수 도중에 포기가 가능하나 재신청은 되지 않음  
※단, 15학번 이후인 학생이 제1전공을 다전공과정(Multifull Major Course)으로 이수중인데, 포기한 학생자율설계전공이 유일한 추가전공이었던 경우라면 다른 전공을 제2전공으로 지정하거나 제1전공을 심화과정(Extra Credit Course)으로 이수하여야 함

## ▶ 아래의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교과목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이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졸업논문제 변경

## ▶ 해외교환학점과 국내교류학점 인정

-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1:1 매칭으로 인정 가능
- 또, 우리대학에 없는 교과목이라도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과목이면, 학생자율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학생자율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
- 단, 졸업기준학점의 1/2 이상(18학점)은 우리대학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 학점인정 승인절차 및 참고사항

구분	승인절차	비고
해외교환학점	선 이수, 후 승인	· 파견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첨부하여 학생자율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내교류학점	선 승인, 후 이수	· 학생자율설계전공생으로 선발된 이후에 이수한 과목만 인정 · 교환·교류학점은 영역 간 중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식 작성 요령

### △ 학생께서 설계한 전공을 다른 학생들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생자율설계전공은 한 학생 단독 이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향후 다른 학생도 이수할 수 있으므로 신청학생 개인에 맞춘 교육과정 설계가 아닌,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여러 분야를 균형 있게 설계하도록 합니다.

### [서식1] 학생자율설계전공 신청서

#### 1-가 자율설계전공명

- 국문명은 '000전공', 영문명은 'Major in 000' 에서 'Major in'을 제외한 뒷부분만 입력
- 전공의 교육목표와 핵심역량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선택

#### 1-나 학위명

- 국문명은 '000학사', 영문명은 'Bachelor of 000' 로 입력
- 학위명을 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해당전공을 이수했을 시 대학으로부터 수여받을 수 있는 자격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정함. 우리대학 학칙 별표4 참조.

#### 2-가 전공개요

기존 교육과정 분석에 기초한 본 전공의 필요성, 학문수요전망, 전공의 비전 등을 서술 형으로 기재. 우리대학 홈페이지 '대학' 메뉴에서 각 전공 소개 페이지 참조.

#### 2-나 교육목표와 기대효과

해당 전공 이수를 통해 배양하고자 하는 능력, 진출가능 분야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 3 졸업논문제

- 서식에 제시된 형식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함
- 졸업을 위해서는 선택한 논문제 형식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됨

### 학생자율설계전공 지도교수

- 모든 학생자율설계전공에는 지도교수님 위촉이 필수입니다.
- 학생의 제1전공 소속 교원에만 한하지 않으며, 우리대학 모든 전임교원 중 학생 관심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수님을 선택하여 의뢰하면 됩니다.
- 교수님께서 지도교수 위촉을 승낙하시면 전공을 설계하는 과정 중 전공명/학위명 선정, 교육과정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최소 5회 이상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수과정 중에도 계속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식2] 학업계획서

- 학기별 계획, 방학 중 계획, 교내외 활동 등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1page 이내

### [서식3] 교육과정표

- STEP1**  
교과목 둘러보기
- 내가 설계할 전공의 교육과정으로 적합한 전공 및 교과목을 검색  
HOW TO? >> 학교홈페이지 **교육과정조회** 또는 **대학요람**에서 키워드로 검색
  - 교과목은 '전공' 영역의 교과목이어야 함
- STEP2**  
교육과정 편성하기
- 위에서 찾은 교과목들 중 이수단계, 개설학기, 난이도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36~54학점 이내로 교육과정을 편성. 이때 3개 이상의 전공이 포함되어야 함.
  - 편성하려는 과목의 최근 몇 년간 개설현황을 확인  
※ 꾸준히 개설되었던 과목 위주로 구성하여야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음  
HOW TO? >> 학교홈페이지 **강의시간표 조회**에서 최근 2~3개년 정도 학기를 거슬러가며 과목 검색
  - 이미 이수 완료한 과목은 최대 18학점까지만 포함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시에는 학점 배정에 유의 바람. 중복학점은 9학점까지만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 영역에서 학점부족이 생길 수 있음.  
▶ 본인 제1전공의 전공필수 ▶ 이수중인 복수전공의 전공필수 ▶ 이수중인 연계전공의 필수교과목
- STEP3**  
교육과정표 작성
- 서식3 교육과정표를 작성
- 표 작성 시, ①학부(과)·전공명 ②이수단계 ③개설학기 ④과목명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도 셀을 병합하지 않고 모든 셀에 내용을 입력
  - 이미 이수한 과목은 '기이수여부' 칸에 V표시
- STEP4**  
전공별 승인 획득
- 교육과정에 포함된 전공별로 학부(과)장·전공주임의 날인이 필요
  - 각 학부(과)장·전공주임과 이메일, 내선전화 등으로 면담일정을 잡고 교육과정표에 날인 요망

#### ※교육과정 편성 기준 요약

no.	편성기준	비고
1	3개 이상 전공의 교육과정을 교차	각 학부(과)장·전공주임의 승인 필요
2	교과구분이 '전공'인 교과목으로 구성	교양 교과목 포함 불가
3	36학점 이상 54학점 이하로 구성	졸업기준학점은 36학점
4	기 이수완료 교과는 18학점 이내로만 포함 가능	
5	국내외 현장실습 과목은 포함 불가 원칙	단, 전공 특성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아 포함 가능

//끝//